

KCCF 코치인증시험 자격 요건

1. CAC 자격

Christian Associate Coach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소그룹, 구역, 목장 등)에서 코칭기술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자격으로서 예비 코치를 의미한다.	
서약서	크리스천 코치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지원서	별도 양식
코칭교육①	20 시간 이상
코칭실습②	50 시간 이상(유료 25 시간 이상)
고객 추천서	면제
코치 추천서③	CAC 코치 이상 추천서 1 통 (실제 코칭을 관찰 후)
멘토 코칭 받기④	CAC 이상 코치에게 4 회 이상 받기
크리스천 코칭 이해⑤	O.T 동영상 강의 3 시간 요약 (인증시 최초 1 회 제출)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면제
코칭 세션 녹취록 제출	면제
실습시험⑥	실시
심사비⑦	15 만원(협회의무가입, 협회회원비 별도)
기간⑧	3 년(갱신 필요)

1. KCCF 프로그램 및 지부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한국코치협회(KCA), 국제코치협회(ICF, IAC) 및 그 외 공인된 기관의 프로그램을 20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1) 코칭실습 1 회(세션)는 30 분 이상 120 분 이하이어야 한다. 코칭실습시간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고객 자신이 코칭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2) 고객은 최소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코칭교육시간에 실시한 코칭데모, 코칭실습은 코칭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룹코칭의 경우 10 인 이하이어야 하며 그룹워크숍, 그룹교육과는 구별된다. 그룹코칭 시간은 직접 실시한 시간만을 카운트하며 그룹인원 수에 따라 증가되지 않는다. (5 명의 그룹에게 2 시간 그룹코칭을 실시하면 2 시간만 카운트 된다).

그룹코칭 역시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고객 자신이 코칭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하며 교육 중에 실시한 그룹코칭데모는 그룹코칭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교회 내에서의 코칭은 1)번의 항목에 준하여야 코칭실습에 포함된다. 자신이 속한

회사 조직 내에서의 내부코칭도 코칭실습시간에 포함되지만 직속 부하직원(직접 보고를 받는 부하직원)의 코칭은 제외된다.

(협회에 제출하는 코칭실습리스트에는 제외되지만 직속 부하직원을 코칭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의 내부코칭이 유료코칭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코치 또는 유사한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코칭실습리스트 제출 시 HR(Human Resource) 부서 책임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HR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급 이상의 임원 사인이 필요하다.

5) 코치더 코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지원자가 자신 보다 상위 인증 코치(CAC 이상)로부터 지도(supervision)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원자는 자신이 직접 코칭 시연한 장면에 대하여 전문코치로부터 전문코칭역량과 스킬에 대한 피드백, 코멘트 등 지도(supervision)를 받게 된다.

CAC 지원자는 CAC 이상 인증 코치로부터 1 대 1, 피어 코치더코치를 받았을 경우, 그 시간의 2 배의 시간을 최대 25 시간까지 코칭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그룹 코치더코치(3-5 명)의 경우에는 1 배의 시간을 최대 25 시간까지 코칭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코치더코치 받은 시간을 코칭 실습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무료 코칭 실습시간에 해당된다.

6) 버디 코칭(상호 코칭)이란 동일한 인증자격의 코치들이 (예비 코치 포함) 서로 상호 코칭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버디코칭을 하면서 서로 코칭피를 주고받는 형태는 유료코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가족을 코칭하면서 코칭피를 받는 형태는 유료코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정식 코칭교육(코치인증 지원서에 기록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 코칭은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CAC 지원자를 추천하는 코치는 지원자의 코칭하는 장면을 실제 관찰한 후 코칭역량, 스킬에 대하여 추천서에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협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CAC 이상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멘토코칭이란 지원자보다 상위 코치 인증자로부터 코칭을 경험하는(받는) 것을 의미한다. CAC 지원자는 CAC 이상 코치로부터 지원자가 고객이 되어 4 회 이상 멘토 코칭을 받아야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1 주일 1 회, 혹은 2 주일 1 회)

멘토코치가 추천서를 작성 할 경우 지원자의 코칭시연을 반드시 실제 관찰 후 코칭역량, 스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멘토 코치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준하여 코치이(지원자)의 코칭시연에 대한 코칭 피드백 기록을 남겨야 한다.

5. 크리스천 코칭 이해를 위한 동영상 강의를 3 시간 이상 들어야 하며 내용 요약은 협회가 제공하는 별도 양식을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지원자 최초 1 회 제출 한다.
(인증지원서류 참조)

6. 1) 실습시험은 텔레로 약 1 시간 40 분 진행되며(지원자 2 인 1 조) 코칭시연은 각 개인당 40 분간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크리스천 코치 윤리와 철학(10), 경험, 성품, 태도(10), 코칭스킬(80)이며 총점이 70 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각 분야별로 50%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2) 지원자가 시간에 늦거나 코칭시연을 위한 적절치 않은 환경 (운전, 소음, 전화상의 불편 등)에서 시험에 응하여 상대 지원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윤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7. 1) 인증심사비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으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금해야한다.

2) 인증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며 협회회원비는 별도이다.

3) 불합격자는 1 회에 한하여 1 년(12 개월) 내에 재응시할 수 있다.

재응시는 불합격된 부분(서류심사)에서의 재시험을 말한다.

CAC 서류심사 재응시비는 3 만원이다.

4) CAC 취득 후 협회의 정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CAC 자격이 일시 중지되며 협회 홈페이지 CAC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연회비를 소급 납부하여야 한다.

8. 인증코치는 정기(유료)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은 만료 14 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간연장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CCF 코치인증시험 자격 요건

1. CCC 자격

Christian Certified Coach	
교회나 여러 기관에 파견되어 담당코치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코치자격을 의미한다.	
서약서	크리스천 코치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지원서	별도 양식
코칭교육①	40 시간 이상
코칭실습②	100 시간 이상 (유료 50 시간 이상)
고객 추천서	2 인 각 1 통 (총 2 통)
코치 추천서③	CCC 코치 이상 추천서 2 인 각 1 통 (총 2 통) (실제 코칭을 관찰 후)
멘토 코칭 받기④	CCC 이상 코치에게 6 회 이상 받기
크리스천 코칭 이해⑤	25 시간 이상 (O.T 동영상 강의 3 시간 요약포함)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⑥	⑤ 번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확인서
코칭 세션 녹음 및 녹취록 제출	면제
실습시험⑦	실시
심사비⑧	20 만원(협회의무가입, 협회회원비 별도)
기간⑨	5 년(갱신 필요)
인증 후 KCCF 교육추천사항⑩	인증 후 매년 협회월례교육 및 코치 모임 3 회 이상 참여

위 CCC 인증은 CAC 인증 6 개월 후에 가능하나 단, KPC(한국코치협회)이상, ACC 이상 (국제코치협회)의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 혹은 그 외 모든 지원자격 요건이 CC 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족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인증 지원시 소지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1. KCCF 프로그램 및 지부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한국코치협회(KCA), 국제코치협회(ICF, IAC) 및 그 외 공인된 기간의 프로그램을 40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1) 코칭실습 1 회(세션)는 30 분 이상 120 분 이하이어야 한다. 코칭실습시간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고객 자신이 코칭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2)고객은 최소 5 명 이상이어야 한다.

코칭교육시간에 실시한 코칭데모, 코칭실습은 코칭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룹코칭의 경우 10인 이하이어야 하며 그룹워크숍, 그룹교육과는 구별된다.

그룹코칭 시간은 직접 실시한 시간만을 카운트하며 그룹인원 수에 따라 증가되지 않는다.
(5명의 그룹에게 2시간 그룹코칭을 실시하면 2시간만 카운트 된다).

그룹코칭 역시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고객 자신이 코칭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하며 교육 중에 실시한 그룹코칭데모는 그룹코칭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교회 내에서의 코칭은 1)번의 항목에 준하여야 코칭실습에 포함된다. 자신이 속한 회사 조직 내에서의 내부코칭도 코칭실습시간에 포함되지만 직속 부하직원(직접 보고를 받는 부하직원)의 코칭은 제외된다.

(협회에 제출하는 코칭실습리스트에는 제외되지만 직속 부하직원을 코칭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의 내부코칭이 유료코칭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코치 또는 유사한 직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코칭실습리스트 제출 시 HR(Human Resource) 부서 책임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HR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급 이상의 임원 사인이 필요하다.

5) 코치더 코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지원자가 자신 보다 상위 인증 코치(전문 코치)로부터 지도(supervision)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원자는 자신이 직접 코칭 시연한 장면에 대하여 전문코치로부터 전문코칭역량과 스킬에 대한 피드백, 코멘트 등 지도(supervision)를 받게 된다.

CCC 지원자는 CCC 이상 인증 코치로부터 1대1, 피어 코치더코치를 받았을 경우, 그 시간의 2배의 시간을 최대 25시간까지 코칭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그룹 코치더코치(3-5명)의 경우에는 1배의 시간을 최대 25시간까지 코칭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코치더코치 받은 시간을 코칭 실습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무료 코칭 실습시간에 해당된다.

6) 버디 코칭(상호 코칭)이란 동일한 인증자격의 코치들이 서로 상호 코칭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버디코칭을 하면서 서로 코칭피를 주고 받는 형태는 유료코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가족을 코칭하면서 코칭피를 받는 형태는 유료코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정식 코칭교육(코치인증 지원서에 기록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 코칭은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CCC 지원자를 추천자는 코치는 지원자의 코칭하는 장면을 실제 관찰한 후 코칭역량, 스킬에 대하여 추천서에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협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CCC 이상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멘토코칭이란 지원자보다 상위 코치 인증자로부터 코칭을 경험하는(받는) 것을 의미한다.

CCC 지원자는 CCC 이상 코치로부터 지원자가 고객이 되어 6 회 이상 멘토 코칭을 받아야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1 주일 1 회, 혹은 2 주일 1 회)

멘토코치가 추천서를 작성 할 경우 지원자의 코칭시연을 반드시 실제 관찰 후 코칭역량, 스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멘토 코치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준하여 코치이(지원자)의 코칭시연에 대한 코칭 피드백 기록을 남겨야 한다.

5. 한국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실시하는 크리스천 코칭 이해 프로그램을 25 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25 시간 이상에는 O.T 동영상 강의가 포함되며, 동영상 요약은 모든 인증지원 최초 1 회 제출해야 한다. (인증지원서류 참조)

6. 한국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실시하는 크리스천 코칭 이해 프로그램을 25 시간 이상 참여했다는 확인서 이며 인증지원 서류로 첨부되어있다.

7. 1) 실습시험은 텔레로 약 1 시간 40 분 진행되며(지원자 2 인 1 조) 코칭시연은 각 개인당 40 분간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크리스천 코치 윤리와 철학(10), 경험, 성품, 태도(10), 코칭스킬(80)이며 총점이 70 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각 분야별로 50%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2) 지원자가 시간에 늦거나 코칭시연을 위한 적절치 않은 환경 (운전, 소음, 전화상의 불편 등)에서 시험에 응하여 상대 지원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윤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8. 1) 인증심사비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으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금해야한다.

2) 인증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며 협회회원비는 별도이다.

3) 1 차 불합격자는 1 년(12 개월) 내에 1 회 재 응시할 수 있다. 재 응시는 불합격된 부분(서류심사, 실습시험 중)에서의 재시험을 말한다. CCC 를 서류심사부터 재 응시 할 경우 재 응시비는 5 만원, 실습시험만 재응시 할 경우의 재 응시비는 10 만원이다.

4) CCC 취득 후 협회의 정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CCC 자격이 일시 중지되며 협회 홈페이지 CCC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CCC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연회비를 소급 납부하여야 한다.

9. 인증코치는 정기(유료)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은 만료 14 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간연장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10. 매년 협회 월례교육, 코치대회 3 회 이상 참가할 것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지원 서류 참조) 자격 기간 연장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위하여 그 증빙자료를 요구 할 경우 사전에 협회로부터 참가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CCF 코치인증시험 자격 요건

1. CTC 자격

Christian Training Coach	
CCC 코치를 훈련 또는 멘토링(mentoring) 할 수 있도록 코칭역량을 갖춘 코치자격을 의미한다.	
서약서	크리스천 코치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지원서	별도 양식
코칭교육①	100 시간 이상
코칭실습②	500 시간 이상 (유료 250 시간 이상)
고객 추천서	2 인 각 1 통 (총 2 통)
코치 추천서③	CTC 코치 이상 추천서 2 인 각 1 통 (총 2 통) (실제 코칭을 관찰 후)
멘토 코칭 받기④	CTC 이상 코치(2 명이상)에게 6 회 이상 받기
크리스천 코칭 이해⑤	35 시간 이상 (O.T 동영상 강의 3 시간 요약포함)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⑥	⑤번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확인서
코칭 세션 녹음 및 녹취록 제출⑦	녹음 파일 1 개 (40~60 분) + 해당파일 녹취록(인증지원서류 참조)
실습시험⑧	실시
심사비⑨	25 만원(협회의무가입, 협회회원비 별도)
기간⑩	5 년(갱신 필요)
인증 후 KCCF 교육추천사항⑪	인증 후 매년 협회월례교육 및 코치 모임 6 회 이상 참여
멘토 코칭 해주기⑫	CAC, CCC 코치(6 명 이상)에게 15 회 이상 해주기

1. KCCF 프로그램 및 지부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한국코치협회(KCA), 국제코치협회(ICF, IAC) 및 그 외 공인된 기간의 프로그램을 100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1) 코칭실습 1 회(세션)은 30 분 이상 120 분 이하이어야 한다. 코칭실습시간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고객 자신이 코칭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2) 고객은 최소 10 명 이상이어야 한다.

코칭교육시간에 실시한 코칭데모, 코칭실습은 코칭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룹코칭의 경우 10 인 이하이어야 하며 그룹워크숍, 그룹교육과는 구별된다.

그룹코칭 시간은 직접 실시한 시간만을 카운트하며 그룹인원 수에 따라 증가되지 않는다.

(5 명의 그룹에게 2 시간 그룹코칭을 실시하면 2 시간만 카운트 된다).

그룹코칭 역시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고객 자신이 코칭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하며 교육 중에 실시한 그룹코칭데모는 그룹코칭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교회 내에서의 코칭은 1)번의 항목에 준하여야 코칭실습에 포함된다. 자신이 속한 회사 조직 내에서의 내부코칭도 코칭실습시간에 포함되지만 직속 부하직원(직접 보고를 받는 부하직원)의 코칭은 제외된다.

(협회에 제출하는 코칭실습리스트에는 제외되지만 직속 부하직원을 코칭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의 내부코칭이 유료코칭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코치 또는 유사한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코칭실습리스트 제출 시 HR(Human Resource) 부서 책임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HR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급 이상의 임원 사인이 필요하다.

5) 코치더 코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지원자가 자신 보다 상위 인증 코치(전문 코치)로부터 지도(supervision)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원자는 자신이 직접 코칭 시연한 장면에 대하여 전문코치로부터 전문코칭역량과 스킬에 대한 피드백, 코멘트 등 지도(supervision)를 받게된다.

CTC 지원자는 CTC 이상 인증 코치로부터 1 대 1, 피어 코치더코치를 받았을 경우, 그 시간의 2 배의 시간을 최대 25 시간까지 코칭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그룹 코치더코치(3-5 명)의 경우에는 1 배의 시간을 최대 25 시간까지 코칭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코치더코치 받은 시간을 코칭 실습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무료 코칭 실습시간에 해당된다.

6) 버디 코칭(상호 코칭)이란 동일한 인증자격의 코치들이 서로 상호 코칭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버디코칭을 하면서 서로 코칭피를 주고받는 형태는 유료코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가족을 코칭하면서 코칭피를 받는 형태는 유료코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정식 코칭교육(코치인증 지원서에 기록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 코칭은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CTC 지원자를 추천하는 코치는 지원자의 코칭하는 장면을 실제 관찰한 후 코칭역량, 스킬에 대하여 추천서에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협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CTC 이상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멘토코칭이란 지원자보다 상위 코치 인증자로부터 코칭을 경험하는(받는) 것을 의미한다.

CTC 지원자는 CTC 이상 (2 명 이상) 코치로부터 지원자가 고객이 되어 6 회 이상 멘토 코칭을 받아야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1 주일 1 회, 혹은 2 주일 1 회)

멘토코치가 추천서를 작성 할 경우 지원자의 코칭시연을 반드시 실제 관찰 후 코칭역량, 스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멘토 코치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준하여 코치이(지원자)의 코칭시연에 대한 코칭 피드백 기록을 남겨야 한다.

5. 한국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실시하는 크리스천 코칭 이해 프로그램을 35 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35 시간 이상에는 O.T 동영상 강의가 포함되며, 동영상 요약은 모든 인증지원 최초 1 회 제출해야 한다. (인증지원서류 참조)

6. 한국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실시하는 크리스천 코칭 이해 프로그램을 35 시간 이상 참여했다는 확인서 이며 인증지원 서류로 첨부되어있다.

7. CTC 지원자는 코칭세션의 녹음 파일과 해당 파일의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인증심사시 참조되며 심사후 폐기된다.

지원일로부터 1 년 이내의 코칭세션이어야 하며 실제 코칭 리스트에 기록되어진 고객이어야 한다. 녹취록의 기록양식은 지원서류에 포함되어있다.

8. 1) 실습시험은 텔레로 약 1 시간 40 분 진행되며(지원자 2 인 1 조) 코칭시연은 각 개인당 40 분간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크리스천 코치 윤리와 철학(10), 경험, 성품, 태도(10), 코칭스킬(80)이며 총점이 70 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각 분야별로 50%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2) 지원자가 시간에 늦거나 코칭시연을 위한 적절치 않은 환경 (운전, 소음, 전화상의 불편 등)에서 시험에 응하여 상대 지원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윤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9. 1) 인증심사비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으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금해야한다.

2) 인증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며 협회회원비는 별도이다.

3) 1 차 불합격자는 1 년(12 개월) 내에 1 회 재 응시할 수 있다. 재 응시는 불합격된 부분(서류심사, 실습시험 중)에서의 재시험을 말한다. CTC 를 서류심사부터 재 응시 할 경우 재 응시비는 5 만원, 실습시험만 재응시 할 경우의 재 응시비는 15 만원이다.

4) CTC 취득 후 협회의 정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CTC 자격이 일시 중지되며 협회 홈페이지 CTC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CTC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연회비를 소급 납부하여야 한다.

10. 인증코치는 정기(유료)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은 만료 14 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간연장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11. 인증코치는 매년 협회 월례교육, 코치대회 6 회 이상 참가할 것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지원 서류 참조) 자격 기간 연장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위하여 그 증빙자료를 요구 할 경우 사전에 협회로부터 참가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12. CTC 인증코치는 자격 취득 후 CAC, CCC 코치들 6 명 이상을 멘토 코칭해 주어야 한다.

멘토 코칭을 해주었을 때, CMC 인증 자격 지원이 가능하며 멘토코칭에 관련된 기록을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CCF 코치인증시험 자격 요건

1. CMC 자격

Christian Master Coach	
CTC 코치를 훈련하거나 멘토링(mentoring) 할 수 있도록 코칭역량을 갖춘 코치자격을 의미한다.	
서약서	크리스천 코치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지원서	별도 양식
코칭교육①	160 시간 이상
코칭실습②	1000 시간 이상 (유료 500 시간 이상)
고객 추천서	2 인 각 1 통 (총 2 통)
코치 추천서③	CMC 코치 추천서 2 인 각 1 통 (총 2 통) (실제 코칭을 관찰 후)
멘토 코칭 받기④	CMC 코치에게 6 회 이상 받기
크리스천 코칭 이해⑤	45 시간 이상 (O.T 동영상 강의 3 시간 요약포함)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⑥	⑤ 번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확인서
코칭 세션 녹음 및 녹취록 제출⑦	녹음 파일 1 개 (40~60 분) + 해당파일 녹취록(인증지원서류 참조)
실습시험⑧	실시
심사비⑨	50 만원(협회의무가입, 협회회원비 면제)
기간⑩	5 년(갱신 필요)
인증 후 KCCF 교육추천사항⑪	인증 후 매년 협회월례교육 및 코치 모임 12 회 이상 참여
멘토 코칭 해주기⑫	CCC, CTC 코치들(12 명이상)에게 해주기

1. KCCF 프로그램 및 지부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한국코치협회(KCA), 국제코치협회(ICF, IAC) 및 그 외 공인된 기간의 프로그램을 160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1) 코칭실습 1 회(세션)은 30 분 이상 120 분 이하이어야 한다. 코칭실습시간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고객 자신이 코칭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2) 고객은 최소 20 명 이상이어야 한다.

코칭교육시간에 실시한 코칭데모, 코칭실습은 코칭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룹코칭의 경우 10 인 이하이어야 하며 그룹워크숍, 그룹교육과는 구별된다.

그룹코칭 시간은 직접 실시한 시간만을 카운트하며 그룹인원 수에 따라 증가되지 않는다.

(5 명의 그룹에게 2 시간 그룹코칭을 실시하면 2 시간만 카운트 된다).

그룹코칭 역시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약(구두, 서류)에 의해 고객 자신이 코칭 받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하며 교육 중에 실시한 그룹코칭데모는 그룹코칭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교회 내에서의 코칭은 1)번의 항목에 준하여야 코칭실습에 포함된다. 자신이 속한 회사 조직 내에서의 내부코칭도 코칭실습시간에 포함되지만 직속 부하직원(직접 보고를 받는 부하직원)의 코칭은 제외된다.

(협회에 제출하는 코칭실습리스트에는 제외되지만 직속 부하직원을 코칭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의 내부코칭이 유료코칭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코치 또는 유사한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코칭실습리스트 제출 시 HR(Human Resource) 부서 책임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HR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급 이상의 임원 사인이 필요하다.

5) 코치더 코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지원자가 자신 보다 상위 인증 코치(전문 코치)로부터 지도(supervision)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원자는 자신이 직접 코칭 시연한 장면에 대하여 전문코치로부터 전문코칭역량과 스킬에 대한 피드백, 코멘트 등 지도(supervision)를 받게된다.

CMC 지원자는 CMC 인증 코치로부터 1 대 1, 피어 코치더코치를 받았을 경우, 그 시간의 2 배의 시간을 최대 25 시간까지 코칭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그룹 코치더코치(3-5 명)의 경우에는 1 배의 시간을 최대 25 시간까지 코칭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준다.

코치더코치 받은 시간을 코칭 실습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무료 코칭 실습시간에 해당된다.

6) 버디 코칭(상호 코칭)이란 동일한 인증자격의 코치들이 서로 상호 코칭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버디코칭을 하면서 서로 코칭피를 주고받는 형태는 유료코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가족을 코칭하면서 코칭피를 받는 형태는 유료코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정식 코칭교육(코치인증 지원서에 기록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 코칭은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CMC 지원자를 추천하는 코치는 지원자의 코칭하는 장면을 실제 관찰한 후 코칭역량, 스킬에 대하여 추천서에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협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CMC 코치가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멘토코칭이란 지원자보다 상위 코치 인증자로부터 코칭을 경험하는 (받는)것을 의미한다.

CMC 지원자는 CMC 코치로부터 지원자가 고객이 되어 6 회 이상 멘토 코칭을 받아야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1 주일 1 회, 혹은 2 주일 1 회)

멘토코치가 추천서를 작성 할 경우 지원자의 코칭시연을 반드시 실제 관찰 후 코칭역량, 스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멘토 코치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준하여 코치이(지원자)의 코칭시연에 대한 코칭 피드백 기록을 남겨야 한다.

5. 한국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실시하는 크리스천 코칭 이해 프로그램을 45 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45 시간 이상에는 O.T 동영상 강의가 포함되며, 동영상 요약은 모든 인증지원 최초 1 회 제출해야 한다. (인증지원서류 참조)

6. 한국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실시하는 크리스천 코칭 이해 프로그램을 45 시간 이상 참여했다는 확인서 이며 인증지원 서류로 첨부되어있다.

7. CMC 지원자는 코칭세션의 녹음 파일과 해당 파일의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인증 심사시 참조되며 심사 후 폐기된다. 지원일로부터 1 년 이내의 코칭세션이어야 하며 실제 코칭 리스트에 기록되어진 고객이어야 한다. 녹취록의 기록양식은 지원서류에 포함되어있다.

8. 1) 실습시험은 텔레로 약 1 시간 20 분 진행되며(지원자 2 인 1 조) 코칭시연은 각 개인당 30 분간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크리스천 코치 윤리와 철학(10), 경험, 성품, 태도(10), 코칭스킬(80)이며 총점이 70 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각 분야별로 50%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2) 지원자가 시간에 늦거나 코칭시연을 위한 적절치 않은 환경 (운전, 소음, 전화상의 불편 등)에서 시험에 응하여 상대 지원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윤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9. 1) 인증심사비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으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금해야한다.

2) 인증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며 협회회원비는 별도이다.

3) 1 차 불합격자는 1 년(12 개월) 내에 1 회 재 응시할 수 있다. 재 응시는 불합격된 부분(서류심사, 실습시험 중)에서의 재시험을 말한다. CMC 를 서류심사부터 재 응시 할 경우 재 응시비는 10 만원, 실습시험만 재응시 할 경우의 재 응시비는 30 만원이다.

4) CMC 취득 후 협회의 정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CMC 자격이

일시 중지되며 협회 홈페이지 CMC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CMC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연회비를 소급 납부하여야 한다.

10. 인증코치는 정기(유료)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은 만료 14 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간연장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11. 인증코치는 매년 협회 월례교육, 코치대회 12 회 이상 참가할 것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지원 서류 참조) 자격 기간 연장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위하여 그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전에 협회로부터 참가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12. CMC 인증코치는 자격 취득 후 CCC, CTC 코치들 12 명 이상을 멘토 코칭해 주어야 한다.

또한 멘토코칭에 관련된 기록을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